



미국의 소음규제관련법제 - 확성기 소음규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I. 머리말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으로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또 다른 형태의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사회적

기능을 ①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②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 ③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리하고 있다.¹⁾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1)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83(병합)] 판례집 제15권 2집 하, 41, 52면.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자,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고 한다.



할 것인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1963년 제정된 이래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한 바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출범 이래 다수의 조문이 위헌법률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²⁾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집시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적절한 규율을 위한 노력해 왔음을 일응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용에 있어 만전을 기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2항의 명문에 의해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금지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으로 기능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집회방법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현행 집시법 제14조는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³⁾ 이러한 확성기 등의 사용의 규제는 2004년 3월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집회장소 부근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에서는 집회 참여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의사전달기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확성기 등의 사용규제는 상당부분 집회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결국 적절한 수준의 규제기준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측



2) 헌법재판소 1989.05.24 [88헌가12];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83(병합)]; 헌법재판소 2006.12.28 [2004헌마229] 등. 헌법재판소는 1994년 4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그 별칙을 규정한 구(舊)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다시 한번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적합성이 문제되게 되었다.

3) 집시법 시행령이 마련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다음과 같다(단위: Leq dB(A)).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해 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80 이하	70 이하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의 일환으로 미국에서의 확성기 등의 소음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미국의 경우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통일적인 연방법규가 없고 각 주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법률·조례의 위헌성이 문제된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확성기 등의 소음규제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미국 판례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확성기 등 소음규제관련 법령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연방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 혹은 자치단체가, 특히 옥외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⁴⁾ 그 결과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의 확성기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고, 주 차원의 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부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만 1972년 마련된 『소음 규제법(the Noise Control Act of 1972)』이 생활환경상의 소음과 관련한 기본적

인 규율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하에서는 먼저 이 『소음 규제법』 및 관련 연방규칙상의 생활소음 규제 관련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주의 법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방법률 및 연방규칙

일찍부터 생활환경,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소음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러한 소음의 폐해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소음 규제법(the Noise Control Act of 1972)』이 미국 내의 소음 규제의 기본적인 규율이라 할 수 있다.⁵⁾ 비록 이 법이 주로 상업상의 제품들에 대한 소음기준이나 철도·자동차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집회 등에서의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소음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소음규제의 일차적 책임을 주 혹은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면서도,⁶⁾ 연방정부의 소음규제 정책의 추진을 선언하면서 연방 차원에서의 소음기준 및 규제에 관한 일반 원칙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특히 1978년의 개정을 통해서⁷⁾ 상업적 측면 이외의 소음



4) 강대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3) 416~417쪽; 김상겸, 앞의 논문, 82쪽. 미국에서의 집회에 대한 주 차원의 규율의 예로는 캘리포니아주의 행정규칙 2 CCR § 1208 [Demonstrations, Gatherings, or Public Assemblies and Parades]을 들 수 있다.

5) 이 법은 현재 미연방법률(U.S.C.) 제42장 공공건강과 복지(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제65절 소음 규제(noise control)에 편제되어 있다.

6) 42U.S.C.4901(a)(3).

7) 이 개정안은 『조용한 지역공동체법(Quiet Communities Act of 1978)』으로 불리며(Pub.L. 95-609), 현재 42U.S.C.4913에 편제되어 있다.



에 대한 규율까지 그 분야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소음규제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중요성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러한 연방법률에 의해 소음을 규율하기 위한 연방규칙이 마련되어 있다.⁸⁾ 이 연방규칙은 주거 환경 및 기타 소음에 민감한 상황에 있어서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소음원과의 적절한 이격(離隔)을 제공하고, 소음의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방규칙상의 기본적인 소음기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65데시벨(decibel; 이하 dB) 이하를 ‘허용가능한(acceptable)’ 범위로 설정하고 있고, 65dB 이상 75dB 이하를 ‘일반적으로 허용불가(normally unacceptable)’ / ‘특별한 승인(special approvals)’ 범위로, 75dB 이상을 ‘허용불가(unacceptable)’로 설정하고 있다.⁹⁾

2. 주 법

확성기 등의 소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주 법(State Code)의 예로는 루이지애나 주의 형법과 뉴욕 주의 행정법규를 들 수 있다.

우선 루이지애나 주 형법 제103.1조는 ‘일반적인 평화와 질서 위반죄’의 하나로 ‘음향 증폭 시스템(sound amplification system)’에 의한 ‘과도한 소리나 소음의 발산(emanation of ex-

cessive sound or noise)’을 처벌하고 있다.¹⁰⁾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3.1. 과도한 소리나 소음의 발산; 예외; 벌칙(Emanation of excessive sound or noise; exceptions; penalties)

A.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 통상적인 감각의 소지자들에게 불편이나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합리하게 크거나 혹은 과도한 소리나 소음(unreasonably loud or excessive sound or noise)’을 내는 어떠한 음향 증폭 시스템의 작동도 이루어지거나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1) 음향 증폭 시스템(sound amplification system)이 공공의 거리, 도로 혹은 공원에 있는 차량 등의 내부 혹은 외부에 탑재되어 있을 때
- (2) 음향 증폭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 소리나 소음이 25피트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86dB을 초과하여 들릴 경우

B. 이 조항들은 허가된 행사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상황들의 신호를 위하여 혹은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법집행의 보조를 위해 사용되는 경적, 경보기 등의 경고 장치의 사용에



8) 24 C.F.R. Part51.

9) 24 C.F.R.§51.103.

10) LSA-R.S. 14:103.1.

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이 조의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첫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3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D. (1) 첫번째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법원은 위반자에게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법집행기관에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면허의 회복은 위반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 (2) 두번째 혹은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법원은 위반자에게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법집행기관에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면허의 회복은 위반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 E. 시나 군의 자치정부는 이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요소와 기준 및 벌칙을 이 조항의 내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03.2조에서는 특별한 공공장소에서 음향증폭장치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¹¹⁾



11) LSA-R.S. 14:103.2.

12) 9 NYCRR 300-3.2.

§ 103.2. 공공 장소에서의 음향증폭장치; 조용한 구역; 벌칙(Amplified devices in public places; quiet zones; penalties)

A. 다음의 건물들의 출입구에서 10피트 이내에서 측정된 소음이 5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통상적인 감각의 소지자들에게 불편 혹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방법으로 공공의 거리, 공원 혹은 기타 공공장소에서 음향 산출 장치(sound-producing device) 또는 음향 증폭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연주해서는 안된다.

(1) 병원

(2) 예배 등이 행해지고 있음이 정문의 10피트 이내에 게시된 가운데,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교회, 유대교의 예배당(synagogue), 사원(temples) 혹은 기타의 종교적 숭배를 위한 장소

B. 이 조항의 위반자는 30일 이내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뉴욕 주의 행정법규(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제300-3.2조는 뉴욕 주의 제반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규제되는 행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집회 및 확성기 등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Section 300-3.2 규제되는 용법(Regulated uses)

이 절의 규정들 및 당국의 허가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다음의 행동들이나 주의 재산(state property)에 대한 이용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a)~(b) 생략

(c) 공공 집회. 공공 집회는 이 절의 302-1.6조에 따른 당국의 허가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지정된 공공 장소에서 가능하다.¹³⁾

(d) 음향 증폭장치, 고출력스피커(sound amplifiers, loudspeakers)

(1)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누구도 주 재산 내에서 음향 증폭기나 고출력스피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실내에서는 90데시벨, 실외에서는 95데시벨을 넘는 소리를 내는 모든 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방서, 경찰, 구급차 혹은 군관계자가 직무수행 중에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질서정연한(orderly) 공공 집회, 특별 행사 및 그 밖의 경우에서의 음향 증폭기나 고출력스피커의 사용의 허가는, 공공집회의 신청 절차에 따라 당국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당국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그러한 스피커의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그 허가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으며(non-transferable), 만약 음향이 그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이나 평온에 불편을 끼치거나,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사용될 음향증폭 장치의 형태나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정격출력(power rating)은 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공공 장소에서 공중의 불편, 불쾌 혹은 피해를 야기할 만한 정도의 불합리한 소음(unreasonable noise)을 만들거나, 야기하거나 혹은 만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소음은 통상적인 감각의 소지자들의 평온에 방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건강 혹은 안전에 손상을 끼칠 정도 혹은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주의 활동(State operations)에 장애를 끼칠 정도의 과도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큰 음향(excessive or unusually loud sound)을 의미한다.

(4) 누구도 당국에 의해 발행된 허가상의



13) 공공집회의 신청에 관한 조항은 9 NYCRR 301.6에 편제되어 있다.

표현수위 이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기의 연주 혹은 작동이나 광고나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음을 발생시킬 수 없다.

- (5) 누구도 당국에 의해 기념관(memorial)으로 지정된 곳이나 달리 조용한 지역(quiet zone)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기의 연주 혹은 어떠한 목적의 소음도 발생시켜선 안 되는데, 이는 당국에 의해 지원되는 공식적인 의식이나 기념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즐거움에 부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e)~(i) 생략

한편 뉴욕 주 형법은 제240.20조에서 공공의 불편, 방해, 공포를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혹은 과실로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무질서 행위들을 처벌하면서 그 행위유형 가운데 ‘불합리한 소음(unreasonable noise)’을 발생시킨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¹⁴⁾ 비록 이 조항이 명문으로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성기 등에 의한 소음 역시 이 조항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4) NewYork Penal Law §240.20.

15)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 미합중국의회는 종교를 수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통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Ⅲ. 미국의 학설 및 판례

각종 집회에서의 확성기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 내의 확성기 등에 관한 소음규제관련 법령들은 ‘불합리하게 크거나 혹은 과도한 소리나 소음(unreasonably loud or excessive sound or noise)’ 혹은 ‘불합리한 소음(unreasonable noise)’ 등의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통해 소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방식이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한 미국 내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내에서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를 처음으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개별 주헌법(州憲法)에서부터였으며, 미연방헌법의 차원에서는 1791년의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집회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청원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¹⁵⁾ 이 조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회의 자유가 이처럼 의사표현의 자

유와 같이 규정되었지만, 양자의 긴밀한 연관성은 그 이후에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즉 미국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이처럼 집회의 자유도 광의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원칙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르게 된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며,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규제 내지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다. 즉 집회는 우선 다중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 및 예상하지 못한 무법상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집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특수한 고려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집회가 열릴 수 없음은 물론,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일반 공공에게 개방된 공적 장소

인가 또는 공적 시설인가, 아니면 관리되는 장소나 사적 장소인가에 따라 그 이용관리권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에는 집회에 있어서 표현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와 표현은 허용하되 그러한 의견표현에 수반하는 행동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내용근거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로서의 집회금지는 엄격심사를 받게 되고,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채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에 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시간·장소 또는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중립적 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의 경우에는 합리성 기준에 따르면 족하다고 한다.¹⁷⁾ 집회에서의 확성기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후자인 내용중립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거듭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지방자치단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장소 그리고 방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f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16)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첫째,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둘째,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하며, 셋째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통하여 개인이 공동사회결정에 참여하는 방편을 마련하고, 넷째 사회적 변화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Thomas I.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72 Yale L. J. 877』(1962-1963), pp. 878-93.
- 17) 박용상, 『표현의 자유』(서울: 현암사, 2002), 153~154쪽.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상겸,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5권 제1호(2004.6) 참조.

장을 유지해왔다. 즉 “시간, 장소, 그리고 방법상의 제한들은 표현 활동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이 충돌하게 되는 수단이며,”¹⁸⁾ 그러한 제한들은 “규율되는 표현의 내용에 관계됨이 없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섬세하게 마련되었고, 정보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소통의 여지를 남겨둔 경우에 정당화” 된다.¹⁹⁾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이 엄격한 해석 기준(bright line test)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례마다 각각의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이익들이 필수적으로 형량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제기된 자치단체의 소음규제관련 조례들에 대한 위헌성 심사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공 도로에서 음향증폭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종류의 소음도 금지하고, 정치적 연설을 위해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조례(City ordinance)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에 대한 모호하고, 차별적이며, 부당한 간섭이므로 위헌”²⁰⁾이라 하여 무조건적인 소음규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불합리한 소음(unreasonable noise)’이라는 용어를 타인의 평온 혹은 건강에 장애 혹은 피해를 야기하는 소음 혹은 공동체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

를 위협하는 소음으로 정의하여, 커다란 혹은 부당한 소음을 금지하는 자치단체의 소음조례(Municipal noise ordinance)는 헌법에 불합치할 정도로 모호한 것은 아니다”²¹⁾ 혹은 “‘현저히 시끄러운(unusually loud)’이나 ‘통상적인 감각을 지닌 평균인(reasonable person of normal sensitivities)’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시행정법규가 위헌적으로 모호한 것은 아니다”²²⁾라고 하여 소음규제 조례의 일반적인 규제방식의 합헌성을 긍정한 바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 본 미국의 확성기 등의 소음규제 관련 법규들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 결과로 제정된 소음규제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들과 별개로 제정되어 있는 등의 체계상 요인은 확성기 등의 소음규제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다.



18) United States v. Kokinda, 866 F.2d 699, 703(4th Cir. 1989), rev'd, 497 U.S. 720(1990).

19)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 293(1984); R.A.V. v. City of St. Paul, 112 S. Ct. 2538, 2544 (1992); 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377(1968).

20) U. S. Labor Party v. Rochford, N.D.Ill. 1975, 416 F.Supp. 204.

21) Howard Opera House Associates v. Urban Outfitters, Inc., C.A.2 (Vt.) 2003, 322 F.3d 125.

22) Genco Importing Inc. v. City of New York, S.D.N.Y. 2008, 2008 WL 8575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규제는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빚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소음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섬세한 규정 마련 및 대안적인 소통 채널의 확보를 요구하면서, 매 사안마다 적절한 이익의 형량을 시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와 건강

한 환경을 위한 소음의 규제라는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법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 주 영

(외국법제조사위원, 서울대 BK21 박사후과정연구원)